교과과정위원회규정 3-1-5

규정번호 3-1-5
제정일자 1977.9.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13차 개정
관리부서 교육과정혁신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각 학과의 전공 및 교양과목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기 위한 교과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5.12.03.,2023.03.30)

1.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도입, 개편, 보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03.,2016.05.16.,2020.02.17)
2. (삭제 2016.05.16.)
3. 기초교양(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03.)
4. 학년도별 교육과정 편성·개편 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03.)
5. 3년 주기별 학과 교육과정 전면 개편· 편성 기준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9.03.11.)
6. (신설 2015.12.03.)(호 삭제 2018.12.10.)(호 번호 변경 2019.03.11.)
7. 사회맞춤형교육과정 편성·개편에 관한 사항(신설 2023.03.30.)
8.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03.)(호 번호 변경 2019.03.11.)

제3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과 우리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12.,2024.7.24)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12.,2024.7.2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7.2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7.24.)

④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2.12.)

제5조(연구위원)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연구비)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5> <생략>

<6> 교과과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4조④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제1항제4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제7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1호)